

## 퇴직금 기금 규정

제 1 조(목적) 이 규정은 본회 직원의 퇴직금 지급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 2 조(퇴직의 정의) (1) 퇴직이라 함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.

- ① 사 망
- ② 사 직
- ③ 면 직

(2) 월급여액이라 함은 근로기준법 제 19 조에 규정된 평균임금의 30 일분을 말한다.

제 3 조(적용대상) (1) 이 규정은 사무국장과 사무직원에게 적용한다.

(2) 별정직원의 퇴직금에 관하여는 회장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.

제 4 조(지급조건) 이 규정의 퇴직금은 만 1 년이상 근속한자가 퇴직할 경우 지급한다.

제 5 조(퇴직금의 지급) 본회 직원의 퇴직금 다음과 같이 지급한다.

(1) 퇴직금은 근속연수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계산한다. 단 1 년 미만 근속자에  
게는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.

10 년 미만 : 월급여액 × 근속연수

10 년 이상 : 월급여액 × {10+(근속연수-10) × 1.5}

(2) 직원의 국민연금 불입금 중 본회가 부담한 금액은 퇴직금에서 감하여  
지급한다.

제 6 조(근속연수의 계산) (1) 근속연수는 직원으로 임명된 날부터 퇴직하는 날까지로 계산하며, 퇴직금을 지급받은  
자가 재임용되었을 경우에는 재임용일로부터 기산한다. 이 경우 6 개월 미만은 2 분의 1 년으로 하고 6 개월 이상  
1 년 미만은 1 년으로 한다.

제 7 조(퇴직금의 지급제한) 금고 이상의 형을 받았거나 징계처분에 의하여 면직된 자에 대하여는 퇴직금을  
50/100 감하여 지급한다.

제 8 조(지급방법) 퇴직금은 청구시부터 2 주일 이내에 총액을 통화로서 지급한다.

제 9 조(사망시의 수급순위) 사망퇴직의 경우 퇴직금은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 61 조 내지 제 63 조의 규정을  
준용한다.

제 10 조(사정변경) 이 규정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그 적용을 제한하거나 이를  
개폐할 수 있다.

- (1) 연금 또는 이와 유사한 사회보험제도가 실시된 때
- (2) 학회 운용을 지속할 수 없는 중대한 사태가 발생한 때
- (3) 기타 이 규정의 정상시행이 불가능한 사태가 발생한 때